

보건복지부 승인 정관 (2020.06.17)

정 관

(사)함께만드는세상 정관

제정	2002.12.31	1차 개정	2003.05.29
2차 개정	2004.01.26	3차 개정	2004.04.30
4차 개정	2005.01.27	5차 개정	2006.01.26
6차 개정	2008.10.17	7차 개정	2010.03.30
8차 개정	2012.04.04	9차 개정	2014.02.25
10차 개정	2014.10.24	11차 개정	2017.05.02
		12차 개정	2020.06.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소재)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40에 둔다.

② 법인은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인 대안적 금융을 통해 빈곤,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문화, 지역사회 등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연대의식 고취와 공동체 지향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 저신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창업자문 및 자금지원
2.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자 및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컨설팅사업
3. 지원대상자와 관련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4. 소셜파이낸스 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5. 사회적기업 및 사회혁신기업가 발굴 및 육성사업
6. 시민사회 프로젝트 투자사업
7.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8. 시니어 및 청년 교육·일자리 지원사업
9. 시니어 및 청년 관련 연구 개발·운영·투자
10.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
1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1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후원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법인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의 정관, 제규정 또는 각종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후원회원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9조(구성)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1/3이상이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소집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유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재적회원이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기명날인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차수 및 회의 일자
 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안건 및 의견
 3. 수임 회원 성명
- ③ 총회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4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정회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대표 상임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을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대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대표 상임이사의 직무)

- ① 대표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결과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에의 구성)

- ① 법인의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에의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감사가 정관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임시이사회 소집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 및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가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른 이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기명날인하여 대표상임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는 발언권만 부여한다.
 - 1. 이사회 차수 및 회의 일자
 - 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안건 및 의견
 - 3. 수임 이사 또는 대리인의 성명

제25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법인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상의 필요한 위원회 등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지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고문의 위촉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고문 및 자문위원, 홍보대사

제27조(고문)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과 사회공익정신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 본 법인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정책, 재정, 경영, 기술, 금융 등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홍보대사) 본 법인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는데 적합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

-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정확충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의 역할과 구성)

- ① 본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과적 추진과 실무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제, 임무, 사무처리,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이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사업 수익금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6조(회계감사 및 재정공개)

-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 ①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하되, 그 한도는 총회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실비(교통비, 회의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이 민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당시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준용 규정)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와 같다.

제3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법인 설립 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